제10호(2016. 4. 8.)

수출경쟁분야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와 시사점

이상현 안수정

1. DDA 협상동향 추진 경과 ····· 1

2. 수출경쟁분야 합의결과와 국내영향 검토 ····· 3

3. 시사점 ·····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061-820-2312	kkphil@krei.re.kr
내용 문의	이상현 부연구위원	061-820-2037	shlee@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다자협상체제이며, 참여국의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소규모 패키지 형태로 타결되었음.**

- 나이로비 패키지로 타결된 분야는 수출경쟁(수출보조, 수출금융,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개도국 SSM,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면화임.

○ **나이로비 패키지 타결 결과 참여국의 주요 관심 분야는 수출경쟁임.**

- (수출보조) 선진국은 즉시 철폐하고 개도국은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하였음.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른 개도국 수출물류비 관련 보조는 2023년, 최빈국(LDC)과 식량순수입개도국(NFIDC)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음.
- (수출금융) 선진국의 최대상환기간은 18개월로 규정하였고, 2017년 말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함. 개도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4년의 단계적 이행 기간을 부여함.
- (수출국영무역기업) 나이로비 패키지의 다른 규율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독점력으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
- (식량원조) 운송과 배급 시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화를 허용하며, 수혜국의 정부에서 현금화된 식량원조 활용의 여부에 대해 결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됨.

○ **나이로비 패키지 타결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수출금융, 수출국영무역기업과 식량원조의 합의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농업협정 제4.9조에 따른 수출물류비 보조 철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수출물류비 철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국내 수출농가나 수출단지는 규모가 영세하여 수출물류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타결에 성공하면서 DDA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임. 향후 DDA 협상은 협상의제, 협상방식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포스트 나이로비 협상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입장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DDA 협상동향 추진 경과

ㅁ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협상체제임. DDA는 모든 회원국이 각 의제의 협상결과를 동시에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을 채택함.**

ㅁ **2005년 1월 DDA 협상 시한이 종결된 이후, 12월 홍콩에서 열린 제6차 홍콩 각료회의를 통해 관세 및 보조금 감축방식과 수출보조 철폐시점에 대해 합의하면서 기본골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됨.**

- 수출경쟁 분야에서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등에 대한 세부원칙들을 마련하고 수출보조금은 2013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함.

- 면화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였고,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대해서는 무관세와 무쿼터 수입을 보장하기로 함.

ㅁ **2008년 12월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도출되었으나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의 발동조건 등에 대한 주요국 간의 의견대립으로 최종합의가 무산됨.**

ㅁ **이후 소강상태에 머물던 DDA 협상은 2011년 8차 각료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이슈에 대한 부분타결방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함.**

-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무역원활화(통관절차 간소화), 농업분야(저율관세할당물량 관리,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일반서비스, 수출경쟁, 면화 등), 최빈국 이슈에 대한 조기 부분타결이 이루어짐.

"지난 10여년간 참여국 간 의견 대립으로 DDA 협상 표류"

나이로비 각료회의 수출경쟁분야 중심의 부분적 합의 도출

ㅁ **2015년 내 전체 협상의 타결을 위한 논의가 상반기에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관련 이슈 중 이견이 크지 않은 수출경쟁 부문을 중심으로 성과를 도출하기로 함.**

○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기초로 목표수준을 하향 조정한 브라질, EU, 칠레, 미국 등의 제안서들이 회람되었고, 관련 논의가 진행됨.

○ 한편, G-33 개도국들은 수출경쟁부문의 성과 도출은 개도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목표수준을 낮춘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 도입을 주장함.

ㅁ **2015년 12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회 WTO 각료회의를 통해 4개 쟁점이었던 수출경쟁(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국영 무역기업, 식량원조)분야가 타결됨.**

○ 협상 초기 주요국은 협상타결 시 수출경쟁 부문과 관련하여 국내제도 변경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우려하였으나, 대체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수출경쟁분야 합의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료결정 형식으로 채택됨. 또한, 수출보조 우회방지 등의 수출경쟁분야 규율 개선을 위해 3년마다 농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나이로비 각료결정 사항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표 1. 나이로비 패키지 수출경쟁분야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수출보조	- 선진국은 수출보조 즉시 철폐 - 개도국은 2018년까지 철폐 -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르면 물류비 관련 개도국 수출보조는 2023년까지 철폐
수출금융	- 선진국의 최대상환기간은 18개월로 규정하였고, 2017년 말부터 적용 - 개도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4년의 단계적 이행 기간을 부여
수출국영무역기업	- 독점력으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고, 타 국가의 수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에 합의
식량원조	- 운송과 배급 시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화를 허용 - 수혜국의 정부에서 현금화된 식량원조 활용의 여부에 대해 결정 가능하다는 내용 추가

2. 수출경쟁분야 합의결과와 국내영향 검토

2.1. 수출보조

ㅁ (협상결과) 2015년 나이로비 패키지에서 선진국 수출보조는 즉시 철폐, 개도국 수출보조는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함.

○ 농업협정 제9.4조에서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원은 2023년(2018년+5년)까지 철폐하기로 하였고, 최빈개도국(LDC)과 식량 순수입 개도국(Net Food - 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NFIDC)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함.

○ 선진국의 가공품, 낙농품, 돼지고기에 대한 모든 수출보조금은 2003~2005년 기준 연도의 평균 물량수준으로 2020년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최빈개도국(LDC)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출보조는 2016년부터 철폐함.

○ 회원국들은 우회적인 수출보조금 지급이 불가하고, 이행 기간 동안 품목별로 지난 5년간 지급된 수출보조금의 평균치를 넘지 말아야 함.

○ 회원국들은 최소한의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오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다른 회원국의 수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시장이나 상품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적용할 수 없음.

표 2. 수출보조 관련 DDA 농업협상 동향

시 기	주요 내용
2004년 8월 (기본골격)	- 수출보조 철폐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구체적인 일정 미정 - 개도국은 철폐 우대
2005년 12월 (제6차 홍콩각료회의)	-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 철폐 - 개도국은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라 수출보조 철폐 후 5년간 마케팅, 운송비용 등의 수출보조는 유지 가능
2006년 6월 (세부원칙 초안)	-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 철폐. 2010년까지 50% 철폐, 2013년까지 나머지 50% 철폐
2008년 2월 (세부원칙 1차 수정안)	-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 철폐. 수출보조 물량을 [단계적으로 철폐], [이행기간 말의 실제물량 및 양허수준의 80% 중 낮은 수준을 이행기간 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됨. -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 폐지.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라 수출보조 철폐 후 5년간 마케팅, 운송비용 등의 수출보조는 유지 가능

“선진국 수출보조 즉시 철폐”

(계속)

시 기	주요 내용
2008년 5월 (세부원칙 2차 수정안)	- 1차 수정안과 동일
2008년 7월 (세부원칙 3차 수정안)	- 2차 수정안과 유사하나 옵션의 표현 방식이 [ ]에서 양자택일 구조로 변경되었음.
2008년 12월 (세부원칙 4차 수정안)	- 3차 수정안을 기반으로 선진국 물량기준이 변경되었고, 2003~05년에 수출보조가 지급된 물량의 평균을 이행 초부터 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됨. 새로운 시장 및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보조 불가 - 개도국 규정은 3차 수정안과 동일
2013년 G20 제안	-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의 50% 감축 - 개도국은 2016년까지 수출보조의 25% 감축 -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르면 물류비 관련 개도국의 수출보조는 추가적으로 5년(2021년) 후 철폐 - 면화는 2013년까지 철폐
2013년 발리 패키지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는 데 공감대 형성
2015년 나이로비 패키지	- 선진국은 수출보조 즉시 철폐 - 개도국은 2018년까지 철폐 -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르면 물류비 관련 개도국 수출보조는 2023년까지 철폐 - LDC와 NFIDC는 2030년까지 수출물류비 철폐 면화와 관련하여 선진국은 즉시 철폐, 개도국은 2016년까지 철폐

주 1) G20은 선진국 7개국과 유럽연합(EU) 의장국과 신흥시장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국가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인도, 한국 등임.
2) 최빈개도국(LDC)은 아시아 13개국과 아프리카 34개국, 아메리카 1개국 총 48개국이며, 대표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우간다, 아이티 등임.
3) 식량순수입개도국(NFIDC)은 LDC 국가에 이집트, 가봉, 온두라스, 케냐 등 30개국이 추가되어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DDA 농업협상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개도국 수출보조 2018년까지 철폐 수출물류비 지원 2023년까지 철폐”

ㅁ **(주요국 현황) 농업 수출 보조금은 25개국에만 허용되고, 개도국은 대부분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 최근까지 수출보조금을 지급한 국가는 캐나다, EU,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등 총 6개 국가임.

- 2013년 기준 캐나다의 총 수출보조금은 8,261만 캐나다 달러이며, 전체 허용총액 대비 이행률은 19.6%임. 2012년과 2013년 수출보조금은 전액 생산자금융지원 방식으로 지급됨. 2013년까지 수출보조금이 지급된 품목은 총 4개 품목으로, 탈지분유, 치즈, 기타 우유, 혼합 상품임.
- 2013년 기준 EU의 총 수출보조금은 3만 6천 유로이며, 전체 허용총액 대비 이행률은 0.0005%임. 2012년과 2013년 수출보조금은 전액 직접수출보조 방식으로 지급됨. 2013년까지 수출보조금이 지급된 품목은 총 2개 품목으로, 가금육과 설탕임.
- 2012년 기준 이스라엘의 총 수출보조금은 197만 7천 달러이며, 전체 허용총액 대비 이행률은 1.9%임. 2011년과 2012년 수출보조금은 전액 생산자금융지원으로 지급됨. 2012년 수출보조금이 지급된 품목은 총 3개 품목으로 화훼류, 감귤류 이외 과일, 신선채소임.

○ 개도국은 농업협정 제9.4조에 의한 마케팅 및 수출 물류비만 지원 가능하고, 한국, 인도, 멕시코 등이 지급하고 있음.

표 3. 수출보조금 지급 가능 국가와 지급 가능 품목 수

국가	품목 수	국가	품목 수	국가	품목 수
호주	5	아이슬란드	2	슬로바키아	17
브라질	16	인도네시아	1	남아프리카공화국	62
불가리아	44	이스라엘	6	스위스-리히텐슈타인	5
캐나다	11	멕시코	5	터키	44
콜롬비아	18	뉴질랜드	1	미국	13
시프러스	9	노르웨이	11	우루과이	3
체코공화국	16	파나마	1	베네수엘라	72
EU	20	폴란드	17		
헝가리	16	루마니아	13		

ㅁ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2008년까지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른 수출보조인 수출물류비 지급에 대해 통보[1]하였으며, 2012~14년도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12년에는 369.5억원이 지급됨.[2]**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품목은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쌀가공품, 차류임.

ㅁ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015년 타결된 나이로비 패키지 수출경쟁분야에서 수출보조 철폐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DDA가 아니라도 TPP 등에서 수출보조에 대한 강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

- 영세수출업체가 많은 신선농산물 수출에 있어 수출물류비의 역할은 크나, 현재 국제무역 질서의 흐름을 볼 때 수출물류비 지원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안적 수출지원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간접지원에는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수출자조금을 통한 해외 마케팅 강화, 비관세장벽 해소 등이 있을 수 있음.

1) WTO(2010). G/AG/N/KOR/42.
2)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수출물류비 보조 철폐 대책 마련 필요”

- 농산물 수출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현지 물류나 유통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요 거점에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영세한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조직별 또는 복수의 수출조직이 공동으로 자조금을 형성하여 해외 마케팅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비관세장벽임. 이에 정부가 나서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해준다면 농산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2. 수출금융

“수출금융 상환기간 최장 18개월까지 허용”

ㅁ **(협상결과) 2015년 나이로비 패키지에서 수출금융에 대하여 WTO 농업분야의 실체적 규율을 도입함.**

○ 2013년 G20 제안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며,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었음.

○ 선진국은 2017년 말부터 상환기간을 최장 18개월까지만 허용함. 다만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함.

○ 개도국은 4년의 단계적 이행기간 후인 2020년 말부터 상환기간을 최장 18개월까지만 허용함. 단계적 이행 첫해에는 신규 수출신용 계약에 대해 상환기간을 최장 36개월까지만 허용하고, 단계적 이행 세 번째 해에는 최장 27개월까지만 허용함.

○ 장기적 운영비와 손실을 충당 가능하도록 적정 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해야 함.

표 4. 수출금융 관련 DDA 농업협상 동향

시기	주요 내용	상환기간(자생기간)	
		선진국	개도국
2004년 8월 (기본골격)	- 수입 개도국은 선진국 대비 우대 조치 필요	180일	-
2005년 12월 (제6차 홍콩각료회의)	- 기본골격 합의문과 동일한 내용임.	180일	-
2006년 6월 (세부원칙 초안)	- LDC 국가들의 최대상환기간은 270일이고, 자생기간은 없음.	180일 (4, 5년)	선진국의 두 배 (6, 7.5년)

(계속)

시기	주요 내용	상환기간(자생기간)	
		선진국	개도국
2008년 2월 (세부원칙 1차 수정안)	- 2013년 이행 기간 첫 날부터 적용됨. - LDC 국가와 NFIDC의 최대상환기간은 360일이고, 예외의 경우에는 540일임.	180일 (4, 5년)	이행 1일-360일 2년 후-270일 3년 후-180일 (6, 7.5년)
2008년 5월 (세부원칙 2차 수정안)	- 1차 수정안과 동일 - 개도국의 자생기간이 6, 7.5년에서 선진국의 50% 추가 인정으로 변경됨.	180일 (4, 5년)	이행 1일-360일 2년 후-270일 3년 후-180일 (선진국의 50% 추가 인정)
2008년 7월 (세부원칙 3차 수정안)	- 선진국의 자생기간을 4, 5년에서 4년으로 확정 - 개도국의 상환기간을 180일로 하되, 3년에 걸친 상환기간을 4년으로 연장 - 개도국의 자생기간은 선진국의 50% 추가 인정(6년)	180일 (4년)	이행 1일-360일 2년 후-270일 4년 후-180일 (6년)
2008년 (세부원칙 4차 수정안, Rev. 4)	- 3차 수정안과 동일	180일	360일
2013년 G20 제안	-	360일	이행 1일-1,080일 4년 후-540일
2013년 발리 패키지	- 수출신용 조치의 감축기조 및 감축 약속을 유지	-	-
2015년 나이로비 패키지	- 수출업자의 운영자본 충당을 위한 금융은 규율대상에서 제외 - 선진국 최대상환기간은 2017년 말부터 적용 - 자생기간에 대한 구체적 규율 제거	18개월	18개월 (단계적 이행기간 4년 부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DDA 농업협상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개도국의 상환기간 제한적용 단계적 이행기간 부여

ㅁ **(주요국 현황) 농산물 수출금융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표 5. 수출금융 운용 주요 국가와 수출신용프로그램, 최대상환기간, 품목, 수출대상국

국가	금융기관	프로그램	최대상환기간	품목	수출대상국
한국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1년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수출보험	1년		
브라질	Secretary of the National Treasury	Proex Financiamento	약 5.5개월	02류, 09류, 12류, 15류, 16류 등	이탈리아, 이집트, 중국, 멕시코 등
캐나다	Export Development	외상매출금보험	180일	동물, 곡물, 특용작물,	아프리카, 유럽, 중동
		단일구매자보험	180일		

(계속)

국가		금융기관	프로그램	최대상환기간	품목	수출대상국
		Canada, Canadian Wheat Board	신용곡물판매 프로그램	180일 이상	육류, 원예 등	아시아 멕시코, 중미 및 캐리비안, 북미, 남미
			농식품 신용대출	360일		
EU	오스트리아	Oesterreichisc-he Kontrollbank AG	수출신용보험 일반 프로그램 (비농업 특정)	-	-	-
	불가리아	Bulgarian Export Insurance Agency	단기/중기 리스크보장 프로그램	단기: 2년 중기: 5년	곡물, 과실, 채소, 음료, 담배 등	중국, 케냐,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크로아티아	Hrvatska banka za obnovu i razvitak	수출신용보험 일반 프로그램 (비농업 특정)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프랑스	Coface	단기수출신용보장 (쿠바)	1년	특정 식품 (쿠바), 전 품목 (그리스)	쿠바, 그리스
			신용보험 (그리스)	2년		
	폴란드	KUKE joint stock company	단기수출어음 리스크보험	2년	조제과실과 채소, 면화, 곡물, 와인, 원예, 육류, 감자 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스웨덴	EKN	리스크보장 (무역어음 및 신용장 보증)	360일	식품, 동물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영국	UK Export Finance	수출자금지원제	2년	종자	중국
일본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수출어음보험	2년	02류, 04류, 05류, 07류, 08류, 09류 등	호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중소기업 수출신용보험	2년		
			수출신용보험	2년		
뉴질랜드		New Zealand Export Credit Office	단기무역신용보험	1년	과일, 육류, 꿀, 유제품, 와인 등	유럽, 북미, 아시아, 호주 등
			농산물단기융자 보증(와인)	9개월		
미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GSM-102	18개월	잡곡, 면화, 과실, 육류, 쌀, 밀 등	남미, 중미, 동남아, 동북아 등

자료: WTO.

○ 불가리아, 일본 내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대상환기간이 18개월 이내로 나이로비 패키지의 합의결과 이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영국의 수출자금지원제(종자)와 뉴질랜드의 농산물 단기융자보증(와인) 등은 특정품목 수출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임.
- 프랑스의 단기수출신용보장(쿠바)과 신용보험(그리스)은 특정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임.
- 수출금융 지원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호주임. 미국은 2014년 20.7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신용 지원을 통하여 수출하였음. 호주는 2014년 37억 호주 달러(30억 USD)의 농산물을 수출신용 지원을 통하여 수출하였음.

ㅁ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보험 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담당기관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금융프로그램에는 환변동보험과 단기수출보험이 있음. 또한 보험에 가입하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음.

ㅁ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수출신용과 관련하여 공급자에 대한 운용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주로 표기되었지만 수출신용보증과 수출보험은 해당 각주에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과 수출보험의 경우에는 나이로비의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과 수출보험은 상환기간이 1년으로 2015년 타결된 나이로비 패키지의 상환기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선진국 최대상환기간인 18개월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신용보증과 수출보험의 상환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이번 나이로비 패키지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려했던 자생기간에 대해서도 선진국 4년, 개도국 6년의 규정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운영비용 및 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을 부과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됨에 따라,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수출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프로그램은 농산물 보험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일반 보험과 같이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추세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3. 수출국영무역기업

ㅁ **(협상동향) 수출국영무역기업 관련 내용은 기존에 논의되어 온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기되었던 강화된 규율보다 약화된 수준에서 타결됨.**

○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선진국의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특혜와 독점력 철폐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 당시 농산물 교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이 많았음.

"수출국영무역 기업 관련 기존 논의보다 약화된 수준으로 타결"

○ 반면, 나이로비 패키지에서는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의 구체적인 규율 없이 GATT 1994의 제17조와 부속서 1에 제시된 품목의 수출 시에 운용 가능하며, 2015년 나이로비 패키지에서 결정된 다른 규율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 합의함. 수출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기업의 독점력으로 인한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고, 타 회원국의 수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

표 6. 수출국영무역기업 관련 DDA 농업협상 동향

시기	주요 내용
2004년 8월 (기본골격)	-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 철폐 - 개도국의 경우 국내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예외적 허용
2005년 12월 (제6차 홍콩각료회의)	- 기본골격 합의문과 동일
2006년 6월 (세부원칙 초안)	-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 철폐 - 개도국과 LDC는 국내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함. 수출국영무역기업에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정부 재정지원 및 특혜, 정부에 의한 부채 및 손실 보전, 수출독점력 등을 철폐
2008년 2월 (세부원칙 1차 수정안)	- LDC와 SVE 국가들은 개도국 예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 허용
2008년 5월 (세부원칙 2차 수정안)	- 1차 수정안과 동일
2008년 7월 (세부원칙 3차 수정안)	- 2차 수정안과 동일
2008년 12월 (세부원칙 4차 수정안)	- 3차 수정안과 동일 -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 철폐 시기 괄호 제거

(계속)

시기	주요 내용
2015년 나이로비 패키지	- 기존 4차 수정안보다 구속력이 약화된 최선조항 형태로 합의 - 다른 규율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며,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에 따른 무역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저해하거나 대체하지 말아야 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DDA 농업협상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ㅁ **(주요국 현황) 수출국영무역기업 관련 최근 통보자료(G/AG/W/125/Rev.3/Add.4)에 따르면, 국제 규범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독점력을 배제하고 있는 추세임.**

○ 주요국의 수출국영무역기업에서는 각국의 대표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국영무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콜롬비아의 경우 동일 품목으로 다수의 수출국영무역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독점권을 갖고 있는 수출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는 국가는 호주, 중국(담배), 뉴질랜드(키위), 이스라엘(땅콩)임.

표 7. 주요국의 수출국영무역기업

국가	기업명	품목	독점 여부	운영목적	비고
호주	The Rice Marketing Board for the State of New South Wales, NSW	쌀	○	해외 판매용 쌀의 특성 및 품질의 차별성 제고	
브라질	National Food Supply Company (CONAB)	농업부 및 농업개발부 규정 정책에 부합하는 농산물	×	농업 및 식량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	
캐나다	Canadian Wheat Board (CWB)	곡물	×	곡물 생산자를 대신하여 캐나다산 곡물을 마케팅함	* 2012년부터 독점권이 사라짐
중국	China National Cereals, Oil and Foodstuffs Import and Export Co.	쌀, 옥수수	×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차에 대한 국영무역은 2005년 잠정적 폐지
	Jilin Grain Group Import and Export Co. Ltd.	쌀, 옥수수	×		
	Chinatex Cotton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	면화	×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Cotton and Jute Import and Export Co.	면화	×		

"독점적 수출국영무역기업 운영국가는 호주, 중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계속)

국가	기업명	품목	독점 여부	운영목적	비고
	Xinjiang NongKen (Group) Import and Export Co. Ltd.	면화	×		
	China National Cotton Reserve Corporation	면화	×		
	China National Tobacco Corporation (CNTC)	담배	○		
콜롬비아	Industria Licorera de Caldas	주류(9종)	×	기업의 수익이 주 정부에 귀속되며, 해당 수익으로 빈곤지역에 투자됨.	기업의 수익이 주 정부에 귀속되며, 해당 수익으로 빈곤지역에 투자됨.
	Empresa de Licores DecundinamarcaA	주류(9종)	×		
	Fúrica de Licores y Alcoholes de Antioquia	주류(9종)	×		
뉴질랜드	Zespri Group Limited	키위	○	국내 키위 수출 담당	
베트남	Vietnam Northern Food Corporation, Vinafood1 and Vinafood2	식품, 염가공품	×	농산물의 생산, 가공,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농산물의 생산, 가공,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Vietnam National Coffee Corporation (Vinacafe)	커피	×		
	Vietnam National Tea Corporation, Vinatea	차	×		
이스라엘	Israel Groundnuts Production and Marketing Board (IGPMB)	땅콩	○	땅콩생산재배 계획, 마케팅 업무 및 정책제언	
인도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Marketing Federation of India Ltd. (NAFED)	방가로 장미 (Bangalore Rose), 양파	×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및 공급 유지	
	Karnataka State Agricultural Produce Processing and Export Corporation (KAPPEC)		×		
	Andhra Pradesh State Co-operative Marketing Federation Ltd. (AP MARKFED)		×		
	Gujarat Agro Industries Corporation Ltd. (GAIC), Ahmedabad		×		

(계속)

국가	기업명	품목	독점 여부	운영목적	비고
	Spices Trading Corporation Ltd. (STCL)		×		
	The Karnataka State Cooperative Marketing Federation Limited (KSCMFL)		×		
	West Bengal Essential Commodities Supply Corporation Ltd. (WBECSC)		×		
	Madhya Pradesh State Cooperative Oil Seeds Growers Federation Limited. (MPSCOGFL)		×		
	National Cooperative Consumers' federation of India Ltd. (NCCF)		×		
	Maharashtra State Agricultural Marketing Board (MSAMB)		×		
	Madhya Pradesh State Agro Industries Development Corporation Ltd.		×		
	Tribal Cooperative Marketing Development Federation of India Ltd. (TRIFED)	카라야 고무	–		
	Indian Sugar Exim Corporation Ltd. (ISEC)	특혜 설탕쿼터	–		

자료: WTO.

ㅁ **(우리나라의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율 강화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특히 나이로비 이전의 예상과는 달리 수출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합의 내용이 기존 4차 수정안보다 구속력이 약화된 최선조항의 형태로 합의된 만큼 당분간은 현재 합의 사항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율 강화가 수입국영무역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낮은 수준에서 합의된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합의 내용을 향후 수입국영무역에 관한 논의 시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수출국영무역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2.4. 식량원조분야

ㅁ **(협상동향) 식량원조 관련 이슈는 미국의 제안서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하였고, 전반적으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제안되었던 수준보다 완화되었음.**

○ 현금화 금지 규정을 제외하여 운송과 배급 시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화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전에 현지 시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수혜국의 정부에서 현금화된 식량원조 활용의 여부에 대해 결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됨.

"식량원조분야 세부원칙 4차 수정안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합의"

표 8. 식량원조 관련 DDA 농업협상 동향

시기	주요 내용
2004년 8월 (기본골격)	- 식량원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식량원조로부터 야기되는 상업적 거래 위축에 대해 우려
2005년 12월 (제6차 홍콩각료회의)	- 식량원조용 긴급상황(Safe Box) 구성 식량원조가 우회적인 수출보조금으로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제시
2006년 6월 (세부원칙 초안)	- 식량원조에 대한 세부 쟁점들을 Annex K로 제시 - 주요 쟁점으로 긴급 상황시의 식량원조 규정, 긴급 상황의 정의, 긴급식량원조 선언 기관, 유상공여 유부 및 원조 식량의 현금화와 재수출 가능 여부 등 제시
20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	- 모든 식량원조는 무상으로 제공 - 점차적으로 현금원조로 변경 - 긴급상황(Safe Box): (a) 수혜국 또는 UN 사무총장의 긴급상황 선언, (b) UN 관련 기구, 국제적십자연맹, [관련 지역 또는 국제기구, NGO]의 긴급 상황 호소, (c) 긴급상황을 호소한 기관의 수요평가 필요(수요평가 기간은 [3]개월이며 동 기간에 부정적 평가가 없는 한 이의제기 불가)
2008년 2월 (세부원칙 1차 수정안)	- 현금화를 금지하되 LDC의 경우 예외 인정
2008년 5월 (세부원칙 2차 수정안)	- UN 관련 기구를 다국적 기구(Multilateral agency)로 변경 평가는 객관적이고, 국제기구나 수혜자 국가가 공표하고 증명되는 빈곤과 굶주림 데이터를 반영하여 내용 추가 현금화 대상을 '수송과 전달'에서 '국내수송과 전달'로 구체화
2008년 7월 (세부원칙 3차 수정안)	- 긴급상황 분야에서 LDC 국가의 현금화 시 landlocked 국가는 마지막 하역인접국가의 항구에서 목적지 영토의 국경까지 비용추가 규정 신설
2008년 12월 (세부원칙 4차 수정안)	- 긴급상황 분야는 3차 수정안과 동일
2015년 나이로비 패키지	- 미국의 제안서(JOB/AG/51)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여 기존 4차 수정안보다 구속력이 약화된 수준으로 합의 - 현금화 금지 규정을 제외하여 운송과 배급 시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화를 허용 - 수혜국의 정부에서 현금화된 식량원조 활용의 여부에 대해 결정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DDA 농업협상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ㅁ **(주요국 현황) 식량원조 최근 추이에 따르면, 현물원조를 지양하고 현금원조를 확대하는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현물원조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 일본,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호주가 주요 공여국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의 식량원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그림 1. 세계 식량원조 추이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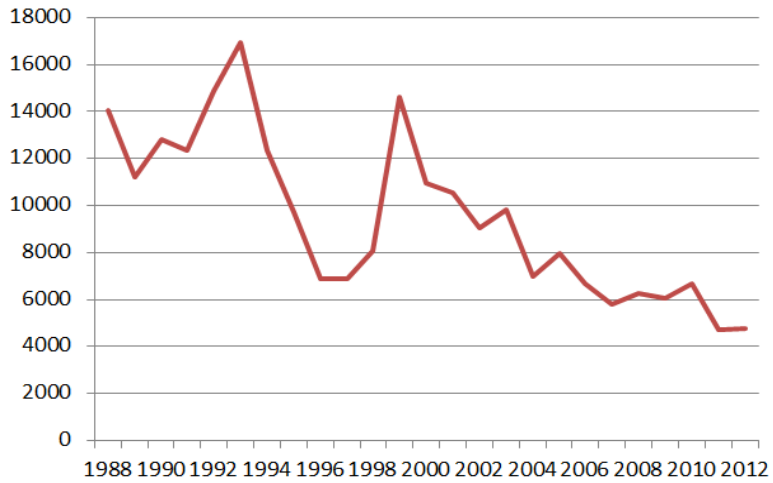

자료: Global Policy Forum.

표 9. 주요 공여국의 식량원조 현황

단위 : 톤

공여국	1988	1996	2004	2012
미국	8,173,767	3,028,442	3,796,053	2,085,722
일본	518,744	433,704	486,669	383,129
브라질	–	–	–	334,294
캐나다	1,208,647	380,393	198,479	279,707
중국	3,900	100,998	133,904	243,382
독일	334,801	288,210	161,985	151,054
호주	338,216	111,953	156,101	68,244
러시아	–	463	34,701	55,711
영국	198,189	91,235	166,946	51,600
한국	–	2,754	406,919	1,296

자료: Global Policy Forum.

"식량원조 최근 추이는 현물원조 감소추세"

ㅁ (우리나라의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상황상 해외원조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대북원조 외에는 식량 원조 규모가 크지 않음. 따라서 규율 강화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잉여 쌀의 격리를 위한 해외원조 및 대북원조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는 있음.

- 2010년 5.24 제재조치로 현재는 대북교역 전면 중단과 함께 식량지원 사업도 보류되어 있음.

"수출보조분야를 제외한 나이로비 합의결과 영향은 제한적"

3. 시사점

ㅁ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DDA 농업분야 내 주요 쟁점 중 수출경쟁분야가 유일하게 타결되었으며, 수출보조 철폐에 합의를 도출함. 특히 수출신용과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는 새로운 규율을 정비한 것에 의미가 있음.

○ 수출보조의 경우 선진국은 즉시 철폐, 개도국은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른 개도국의 수출물류비 보조는 2023년까지 철폐하기로 함.

ㅁ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로비 합의내용 중 수출금융과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분야에 영향을 받지 않음. 반면, 개도국의 수출물류비 보조를 철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수출조직이나 수출농가는 아직까지 수출물류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독립적인 운영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물류비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세한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조직별 또는 복수의 수출조직이 공동으로 자조금을 형성하여 해외 마케팅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ㅁ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는 결국 수출경쟁분야의 스몰패키지에 대한 합의에 그침으로써 향후 DDA협상 진행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 해짐. 이에 따라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작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DDA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였음, 이들을 다시 DD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인이 필요하지만 개도국 그룹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음.

○ 2016년에는 DDA의 협상 방식, 협상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 및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과 도출 없이 기존 각료결정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개도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위임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 요구

”

KREI 현안분석 제10호
수출경쟁분야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4. 8.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